

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1. 5.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8. 11. 6.
다. 상정일자 : 2008. 11. 11.(제1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1. 제안사유

-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사랑의 집 위탁운영 (안 제3조)
 -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 -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음
- 운영비의 충당(안 제5조)
 -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법인전입금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
 - 예산의 법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

○ 입주신청 및 자격(안 제8조)

-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
-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

○ 선정절차(안 제10조)

- 제천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○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13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1. 노인관련 단체의 장
 2. 노인업무 관련 제천시 공무원
 3. 제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
 4.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노인복지법 제4조(보전복지증진의 책임)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
- 동법 제8조(노인전용주거시설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,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임.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10월 8일 입법예고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들에게 삶의 보금 자리를 지원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천시 사랑의 집은 제천시 청전동 482-7, 대지면적 1,887.70m²(571 평), 건축면적 899.27m²(272평)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다목적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38가구를 건축중임.
- 사업주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건축 후 제천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 25일부터 2009년 5월 준공예정임.
- 조례안 제3조(위탁운영) 제천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, 지방자치법 104조(사무의 위임등)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본 시설의 위탁은 가능함.
- 조례안 제5조(운영비의 충당) 제2항 시장은 각 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운영비 지원은 가능함. 향후 소요되는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조례안 제18조(직원의 보수등) 시장이 사람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,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- 우선 제천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독거노인이 몇분 정도나 되는지?(양순경 위원)
: 현재 제천시 독거노인은 전체가 4545명임. 수급자가 1147명, 차상위가 101명, 일반이 3297명임.
-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줄 때 효율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.
(양순경 위원)
: 위탁을 줌으로써 장점은 저희시가 현재 총액 인건비제 체제하면서 직영을 했을 때 거기에 정원관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관리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임.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입주자 민원등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에 따른 부담도 감소됨. 사업의 성격이나 타 지역의 운영사례로 봐서도 위탁운영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였음.
- 위탁시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?(양순경 위원)
: 인건비에 대해서 최소한 3명을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로 판단했으며, 관리운영비는 월 100만원 정도로 생각함.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구입비라든지 가구 구입비 기타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로 보고 내년 예산 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위탁자격은 어떻게 되는지?(양순경 위원)
: 위탁자격은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함.
- 입주 신청 및 자격 8조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자가 1147명이라고 했는데 입주인원은 몇 명인지?
(조덕희 위원)
: 38세대임.

- 1147명중에 38명을 선정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비율이 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입주방법은 어떻게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
(조덕희 위원)
: 대상자중에서 읍면동장한테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음.
- 입주를 한 사람은 계속 거주하는데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지?
(조덕희 위원)
: 기본적으로는 거동이 가능하면 사망시까지임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